

이슈 2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건설산업

## [ 이슈 2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건설산업



##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발표

- ◎ 녹색분류체계(Taxonomy)<sup>4</sup>)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분류 결과인 녹색경제활동의 분류체계 및 활동 리스트를 제시한 것을 말함.
  - 녹색분류체계의 구축 목적은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이고’,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녹색경제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과잉, 과대, 허위 정보를 통해 실제로는 녹색경제활동이나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을 녹색경제활동, 친환경 제품으로 과대 포장하는 녹색위장행위, 즉 그린워싱(Green Washing) 행위와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됨.
- ◎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전략의 구체적 실천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발표한 그린뉴딜계획의 이행을 위해서 2010년대 말 이후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함.
  - 가장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체계로 평가받는 EU Taxonomy의 경우 2019년 5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제출하고, 12월에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채택되었음.
  - 이외에 일본, 중국, 영국 등도 자국의 여건을 고려한 국가 단위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고, 국제표준기구(ISO)에서도 ISO 14030-3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였음.
- ◎ 한국 정부도 2021년 12월 30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정의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해 제시한 분류체계임.
  - 6대 환경목표는 EU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녹색분류체계의 환경목표를 감안해 설정하였는데,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임.

4) 녹색분류체계의 영문 표기인 Taxonomy는 ‘분류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 과학’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로 녹색경제활동을 판별하는 분류 기준을 의미함.

〈표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정의 및 구축 목적

구분	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해 제시한 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li> </ul>
구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 →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 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li> <li>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li> </ul>



##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금융 적용 본격화

- ◎ 정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동 체계의 본격 적용을 시작함.
- ◎ 정부는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 동안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까지 은행 및 기업이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발표함.
  -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지침서를 보완하고,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과 더불어 대출, 투자 등으로 녹색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2023년부터 적용함.
  - 구체적으로 정부는 당초 발표안을 수정하여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과 ‘태풍·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을 녹색부문 활동으로 새로 포함하고,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전환부문’에 포함함.
  - 다만,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일 경우로 제한하고,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을 인정기준으로 추가함.
  -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 대상 대출 등 금융서비스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 3대 원칙 및 적합성 판단 기준과 절차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하면 녹색경제활동은 3대 준수 원칙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데, 동 원칙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4가지로 세분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이 4가지 기준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즉 특정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판단함.

〈표 2〉 녹색경제활동의 3대 준수 원칙 및 적합성 판단 기준/절차

구분	내용
3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 Substantial contribution).</li> <li>▪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 Do No Significant Harm).</li> <li>▪ 최소한의 보호장치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 Minimum Safeguards).</li> </ul>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기준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li> <li>▪ 인정기준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li> <li>▪ 배제기준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li> <li>▪ 보호기준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li> </ul>
판단 절차	<pre>                     graph TD                         A[대상사업] --&gt; B{활동기준}                         B -- 충족 --&gt; C{인정기준}                         B -- 미충족 --&gt; D[녹색분류체계 부적합]                         C -- 충족 --&gt; E{배제기준}                         C -- 미충족 --&gt; D                         E -- 충족 --&gt; F{보호기준}                         E -- 미충족 --&gt; D                         F -- 충족 --&gt; G[녹색분류체계 적합]                         F -- 미충족 --&gt; D                     </pre>



## 도시·건물분야 4가지 경제활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74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을 포함함.
  -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7개 경제활동이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었음.
- ◎ 건설산업의 경우 녹색부문의 도시·건물분야 4가지 경제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음.
  - 건설산업 관련 4가지 경제활동은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개발·운영,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 및 리모델링,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이며, 각 경제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건설 관련 경제활동 분류 현황

경제활동	활동기준	인정기준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개발·운영	①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②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도시 또는 사업 구역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 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① 건물 신축, ②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③ 건물 취득하는 활동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또는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인증을 취득 하였는가(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은 4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주거용, 상업용 등 ①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②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① 에너지 소요량 감축, 에너지자립률 제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설비 설치 활동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설치 활동인가? ②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저탄소 인터넷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그린데이터센터 인증을 취득하였는가?

- ◎ 건설산업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60% 이상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및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배출되는 운영탄소(operational carbon)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음.
  - 건설산업에 배출되는 탄소의 약 35%는 건설단계에서 배출되는데, 특히 시멘트, 철강재 등 자재생산과정에서 대부분의 탄소가 배출됨.
  - 이와 관련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산업분야에 배출원 단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멘트 제조'와 '철강 제조'가 녹색경제활동으로 포함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중요성 및 건설산업 파급효과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단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녹색금융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활동 공시 및 기업평가 기준으로도 적용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의 대응이 요구됨.
  -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금융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 ◎ 구체적으로 향후 국내 건설기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단위인 프로젝트, 자산, 기업 단위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즉 국내 건설기업은 향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기준에 맞춰 기존의 친환경 경영활동과 녹색건설상품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동 활동과 상품의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증가할 것임.

〈표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단위별 활용 예시

구분	내용
프로젝트 단위	재생에너지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 판단
자산 단위	생산시설 등 특정 자산에 대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기초로 녹색경제활동 해당 여부 판단
기업 단위	기업 전체의 매출액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충족하는 녹색자산 또는 프로젝트 관련 매출 비중, 연간 자본지출 중 녹색 자산 또는 프로젝트 관련 투자 규모·지출 비중 등

- ◎ 우선 2023년에는 녹색채권 발행에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며, 이후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녹색여신, 녹색펀드 등 기타 녹색금융으로도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이 향후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 확보를 위해서는 친환경활동을 전개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 내에 제시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수행과 적합성 판단 기준 부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 기존에는 건설기업이 녹색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외부 평가기관 및 금융기관에 의해 해당 기업의 ESG경영을 비롯한 일반적인 친환경 경영수준을 평가한 반면, 향후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에 의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의 수행 여부 및 매출 비중 등이 중시될 전망이다.
  - 향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녹색분류체계 적용이 확대될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프로젝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
- ◎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의 공시 기준 및 기업평가 기준으로도 적용될 전망이다.
  -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은 기존의 공시 및 ESG 보고서 등에 포함하였던 친환경활동에 대해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적용해 기존의 친환경활동들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포함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임.
  - 또한,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외부 신용평가 기관이나 녹색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평가를 받을 경우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친환경 경영활동과 녹색건설상품 매출 비중 등을 평가받는 경우가 증가할 것임.
- ◎ 마지막으로 녹색분류체계는 향후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 진출 시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EU의 경우 녹색분류체계를 2026년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인 국경탄소세(Carbon Border Tax) 적용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녹색이 아닌(Non-Green) 사업에 대한 무역장벽 이행의 근거로 사용할 계획이며, 미국 역시 현재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의회에 발의된 상황임.
  - 향후 국내 건설기업이 탄소국경세가 시행된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탄소 자재의 사용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시멘트, 철강재와 같이 탄소배출이 많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 원가 상승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